

# 예산총칙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98,270,500	14,948,115
일반회계	439,124,149	13,173,724
특별회계	59,146,351	1,774,391
기타특별회계	59,146,351	1,774,391
동남권 핵 의·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	16,000,000	480,000
의료급여기금	379,749	11,392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885,934	26,578
폐기물처리시설	6,202,805	186,084
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	1,000,000	30,000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1,686,785	350,604
원자력발전지역개발	19,063,940	571,918
주차장	3,148,949	94,468
지하수관리	778,189	23,346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·세출예산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 와 같다.

제 4 조 2018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"계속비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720,98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.